

<p>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법 집행국 존 D. 마쉬(John D. Marsh) 국장</p> 	<p>정보 공고</p>	
<p>제목: 혐오 범죄를 금지하거나 특정 혐오 관련 행위의 처벌을 강화한 캘리포니아 법률</p>	<p>번호 2023-DLE-04</p>	<p>정보 문의: 존 D. 마쉬(John D. Marsh) 국장 법 집행국 (916) 210-6300</p>
	<p>날짜: 2023/06/26</p>	

대상: 모든 지방 검사, 경찰국장, 보안관, 주 법 집행 기관

이 공지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주 및 현지 법 집행 관리가 혐오 범죄 행위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폭력 위협이 수반되는 경우 이러한 사건은 우리가 담당하는 주민과 지역 사회에 피해를 줍니다.

혐오 범죄는 범죄자가 투옥되거나 수감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혐오 범죄를 금지하거나 특정 혐오 관련 행위의 처벌을 강화한 여러 캘리포니아 형법에 관한 본 최신 요약본을 현지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합니다. 이 공지에서는 캘리포니아 내의 특정 혐오 범죄 행위에 대한 민사 구제 수단을 규정하는 랄프 시민권법(Ralph Civil Rights Act) 및 톰 베인 시민권법(Tom Bane Civil Rights)도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 공지에서는 기관의 혐오 범죄 정책에 대한 법적 요건과 혐오 범죄 수사 모범 사례를 개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지에서는 캘리포니아 법무부의 인권 집행, 혐오 범죄 수사 및 기소 전문가를 명시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귀하의 관할권 내의 법 집행 활동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혐오 범죄 통계 및 동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법무 장관의 OpenJustice 웹사이트(<https://openjustice.doj.ca.gov/dat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관할권에서 발생한 혐오 범죄를 법무부에 신고하고 공공 안전을 보호하려는 모든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혐오 범죄에 관한 캘리포니아 형법 조항

캘리포니아 법률에서는 실제 장애나 인지된 장애, 성별(성 정체성 및 성 표현 포함), 국적, 인종이나 민족, 종교, 성적 지향, 또는 이러한 실제 특성이나 인지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갖는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를 이유로 피해자가 되는 일정한 범죄는 더 심각하다는 범죄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범죄를 혐오 범죄라고 하며 캘리포니아 형법 섹션 422.6에 따라 독립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섹션 422.7의 가장 요인 또는 섹션 422.75의 강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422.55 혐오 범죄의 정의 - 장애, 성별, 국적, 인종이나 민족, 종교, 성적 지향 등 피해자의 실제 특성이나 인지된 특성 중 하나 이상, 또는 이러한 실제 특성이나 지각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갖는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를 전부 또는 일부의 이유로 행해지는 범죄 행위를 '혐오 범죄'로 정의합니다.

§ 422.56 관련 혐오 범죄 용어 - '성별'을 '성 정체성 및 성별 표현'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국적'을 '출신 국가, 시민권을 포함한 출신 국가, 이민자 신분으로 정의하고 '전부 또는 일부의 이유로'라는 구절을 다른 원인 역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편견이라는 동기가 범죄의 실제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정의하는 것을 포함해, 혐오 범죄와 관련된 법령상 정의를 규정합니다. 여러 가지 동기가 공존하는 경우, 금지되는 편견이 특정 결과를 초래하는 데 상당한 요소여야 합니다. 편견이 주된 요소여야 한다거나, 실제 특성이나 인지된 특성이 없었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 422.6 시민권 방해를 위한 위협 및 기물 파손 - 보호되는 실제 특성이나 인지된 특성을 이유로 무력 또는 무력 위협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시민권 행사 또는 향유를 고의로 손상, 협박, 방해, 억압, 위협하는 행위 (§ 422.6, 하위 항목 (a), (c)), 또는 고의로 그 사람의 재산을 훼손, 손상, 파괴하는 행위 (§ 422.6, 하위 항목 (b))를 독립 범죄로 규정합니다.

무력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시민권을 방해한 사실 (§ 422.6, 하위 항목 (a))을 입증하려면 검사가 다음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1. 타인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나 특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거나 향유하는 것을 피고인이 무력으로 손상하거나, 협박하거나, 방해하거나, 억압하거나, 위협했다는 사실
2. 피고인이 보호되는 타인의 실제 특성이나 인지된 특성 또는 이러한 실제 특성이나 지각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갖는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를 전부 또는 일부의 이유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3.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 또는 특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구체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고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무력 위협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시민권을 방해한 사실 (§ 422.6, 하위 항목 (a), (c))을 입증하려면 검사는 다음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1. 타인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나 특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거나 향유하는 것을 피고인이 무력 위협으로 해치거나, 협박하거나, 방해하거나, 억압하거나, 위협했다는 사실
2. 말로만 이루어진 무력 위협인 경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폭력 위협을 했다는 사실
3. 외관상 협박을 실행할 능력이 피고인에게 있었다는 사실(협박은 피해자에게 합리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4. 피고인이 보호되는 타인의 실제 특성이나 인지된 특성 또는 이러한 실제 특성이나 지각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갖는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를 전부 또는 일부의 이유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5.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 또는 특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구체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고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타인의 재산을 훼손, 손상, 파괴하여 이들의 시민권을 방해한 사실(§ 422.6, 하위 항목 (b))을 입증하려면 검사는 다음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1. 피고가 고의로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훼손, 파손, 파괴했다는 사실
2. 피고인이 보호되는 타인의 실제 특성이나 인지된 특성 또는 이러한 실제 특성이나 지각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갖는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를 전부 또는 일부의 이유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3.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 또는 특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를 위협하거나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고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섹션 422.6에 따른 유죄 판결은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및/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 그리고 최대 400시간의 사회 봉사로 처벌될 수 있는 **경범죄**입니다. (형법 § 422.6, 하위 항목 (c).)

§§ 422.7 및 422.75 경범죄를 워블러(Wobbler)로 격상하는 혐의 -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섹션 422.55의 보호 대상 특성 중 하나 이상에 피해자가 해당한다는 사실이 부분적으로 동기가 된 경우, 이 범죄를 '협오 범죄'로 간주된다고 규정합니다.

§ 422.7(형벌 가중) - 피고인이 편견을 동기로 저지른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검찰 측은 이를 이용해 가중하여 경범죄에 부과되는 형벌보다 가중된 형벌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형량 가중은 공소장에서 신청해야 하며, 형법 섹션 422.6에 따라 처벌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중범죄 워블러: 16개월, 또는 2년이나 3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및/또는 최대 10,000달러의 벌금, 또는 1년의 징역).

검사는 다음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1. 피고인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타인의 권리 또는 특권을 방해하려는 고의로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2. 피고인이 보호되는 타인의 실제 특성이나 지각된 특성을 전부 또는 일부의 이유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3.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 i. 신체 상해를 입혔거나 해당 시점에 폭력으로 인한 상해를 입힐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 또는
 - ii. 950달러를 초과하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사실, 또는
 - iii. 이전에 섹션 422.6, 하위 항목 (a) 또는 (b)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 또는
 - iv. 섹션 422.6, 하위 항목 (a) 또는 (b)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모의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

§ 422.75(중범죄 가중) - 해당 범죄가 협오 범죄라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하는 경우 중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을 규정합니다.

검사는 다음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1. 피해자의 보호되는 실제 특성이나 인지된 특성 또는 이러한 실제 특성이나 지각된 특성 중 하나 이상을 갖는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를 전부 또는 일부의 이유로 기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중범죄 협오 범죄 형량 가중 시, 피고인이 해당 중범죄로 받은 다른 형량에 더해 주립 교도소에서 1년, 2년 또는 3년의 형을 추가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 422.75, 하위 항목 (a).)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중범죄 협오 범죄를 저지른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중범죄 협오 범죄 형량 가중은 징역 2년, 3년 또는 4년으로 늘어납니다. (§ 422.75, 하위 항목 (b).) 총기를 사용해 중범죄 협오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형량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 422.75, 하위 항목 (c).) 중범죄 협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각 전과마다 주립 교도소 징역형 1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22.75, 하위 항목 (d).)

협오 범죄 범주에 속하는 추가적인 범죄 및 가중

섹션 422.7 및 422.75 외에도, 기타 협오 범죄 관련 법령은 특정 협오 관련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을 가중합니다.

§ 190.2, 하위 항목 (a)(16) 특수 상황 - 피해자의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또는 출신 국가가 동기인 1급 살인에 대해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검사는 사망자의 실제 특성이나 인지된 특성을 이유로 피고인이 살인을 의도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190.03, 하위 항목 (a), (c) 형벌 결정 시 관련 요소 - 피해자의 보호되는 실제 특성이나 인지된 특성으로 인한 1급 살인의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사망자의 보호되는 실제 특성이나 인지된 특성을 전부 또는 일부의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 302 종교 집회 방해 - 집회가 열리는 장소 내에서 방해하든, 집회의 순서와 절차를 방해할 정도로 가까운 장소에서 방해하든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처벌: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및/또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

§ 594.3, 하위 항목 (b) 예배 장소 기물 파손 - 협오 범죄로서 예배 장소 또는 묘지를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처벌: 16개월, 또는 2년이나 3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 1170.8 - 예배 장소 가중 상황 - 예배 장소에서 또는 예배 장소에 있는 사람에 대해 행한 강도, 방화 또는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력을 이용한 공격을 가중 요소로 규정합니다.

§ 1170.85, 하위 항목 (b) 특히 취약한 피해자 가중 상황 - 피해자의 나이 또는 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특히 취약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특성을 가중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11411, 하위 항목 (b), (c) 사유 재산, 학교 재산 또는 공공 장소에 대한 위협 - 하위 항목 (b)에서는 사유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또는 이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협을 부주의하게 무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징임을 알면서 허가 없이 타인의 사유 재산에 올라가미를 거는 행위,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징임을 알면서 학교, 대학 캠퍼스, 공공 장소, 예배 장소, 묘지, 또는 직장에 다니거나 일하거나 달리 이와 관련된 사람을 위협할 목적으로 학교, 대학 캠퍼스, 공공 장소, 예배 장소, 묘지, 또는 직장에 올라가미를 거는 행위를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하위 항목 (c)에서는 하위 항목 (b)에서는 사유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또는 이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협을 부주의하게 무시하고 나치 만자 문양 등을 포함하는 기호, 표시, 상징, 엠블럼, 기타 물리적인 모양을 허가 없이 타인의 사유 재산에 배치하거나 표시하는 행위, 또는 학교, 대학 캠퍼스, 공공 장소, 예배 장소, 묘지, 또는 직장에 다니거나 일하거나 달리 이와 관련된 사람을 위협할 목적으로 학교, 대학 캠퍼스, 공공 장소, 예배 장소, 묘지, 또는 직장에 나치 만자 문양 등을 포함하는 기호, 표시, 상징, 엠블럼, 기타 물리적인 모양을 허가 없이 타인의 사유 재산에 배치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중범죄 위블러: 16개월, 또는 2년이나 3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및/또는 최대 10,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차후 유죄 판결 시 벌금 증가))

검사는 다음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1. 피고인이 타인의 사유 재산 또는 학교, 대학 캠퍼스, 공공 장소, 예배 장소, 묘지, 직장의 재산에 기호, 표시, 상징, 엠블럼, 기타 물리적인 모양을 배치하거나 표시했다는 사실
2. 해당 기호, 표시, 상징, 엠블럼, 기타 물리적인 모양을 재산에 배치하거나 표시할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었다는 사실
3. 피고인에게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위협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또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협을 부주의하게 무시하고 행동했다는 사실) 또는 학교, 대학 캠퍼스, 공공 장소, 예배 장소, 묘지, 또는 직장에 다니거나 일하거나 달리 이와 관련된 사람을 위협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

§ 11411, 하위 항목 (d) 종교적 상징물 모독 - 종교적 상징물임을 알면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또는 이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협을 부주의하게 무시하고 허가 없이 타인의 사유 재산에서 십자가 또는 기타 종교적 상징물을 불태우거나 모독하는 사람, 또는 종교적 상징물임을 알면서 학교, 대학 캠퍼스, 공공 장소, 예배 장소, 묘지, 또는 직장에 다니거나 일하거나 달리 이와 관련된 사람을 위협할 목적으로 학교, 대학 캠퍼스, 공공 장소, 예배 장소, 묘지, 또는 직장에서 십자가 또는 기타 종교적 상징물을 불태우거나 모독하거나 파괴하는 사람은 중범죄 또는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중범죄 위블러: 16개월, 또는 2년이나 3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및/또는 최대 10,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 및/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차후 유죄 판결 시 벌금 증가))

검사는 다음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1. 피고인이 타인의 사유 재산 또는 학교, 대학 캠퍼스, 공공 장소, 예배 장소, 묘지, 직장의 재산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불태우거나 모독했다는 사실
2. 불태우거나 모독한 물건이 종교적 상징물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
3. 해당 재산의 종교적 상징물을 태우거나 모독할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었다는 사실
4. 피고인에게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위협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또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부주의하게 무시하고 행동했다는 사실) 또는 학교, 대학 캠퍼스, 공공 장소, 예배 장소, 묘지, 또는 직장에 다니거나 일하거나 달리 이와 관련된 사람을 위협할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

§ 11412 종교 테러 행위 - 폭력 위협으로 종교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범죄임을 규정합니다. (처벌: 주립 교도소 징역 16개월, 또는 2년이나 3년)

검사는 다음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1. 피고인이 사람에 대한 상해나 재산 손상의 위협을 통해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거나(또는 예배 참여를 못하게 했거나)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
2.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위협을 직접 고지했다는 사실
3. 상대방이 위협이 실행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었다는 사실
4. 피고인이 위협할 시점에 피고인은 상대방이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또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

§ 11413, 하위 항목 (a), (b)(2), (b)(9) 파괴 장비를 이용한 종교 테러 행위 - 해당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보호되는 특성으로 인해 해당 재산이 표적이 되었으며 다른 사람을 위협할 목적이었거나 이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부주의하게 무시하고 예배 장소나 사유 재산 또는 그 근처에서 파괴 장비나 폭발물을 폭발, 점화하거나 폭발 또는 점화를 시도하는 행위, 또는 예배 장소나 사유 재산에 불을 지르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합니다. (처벌: 3년, 5년 또는 7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및 최대 10,000달러의 벌금)

검사는 다음 요소를 입증해야 합니다.

1. 피고인이 예배 장소나 사유 재산 및 인근에서 파괴 장비 또는 폭발물을 폭발 또는 점화(또는 폭발 시도나 점화 시도)하거나 방화했다는 사실
2. 피고가 타인을 위협할 의도로, 또는 타인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부주의하게 무시하고 행동했다는 사실

혐오 범죄와 관련된 기타 형법 조항

§ 136.2 보호 명령 - 추가적인 피해에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규정합니다. 형사 법령에 따라 기소되면, 혐오 범죄 피해자는 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적인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422.87 법 집행 기관의 혐오 범죄 정책 - 기존 혐오 범죄 정책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혐오 범죄 정책을 도입하는 모든 현지 법 집행 기관에 대해 특히 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 POST)가 개발한 모범 정책 프레임워크의 내용, 편견 동기에 관한 정보, 모든 경찰관이 혐오 범죄 정책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 일반적인 혐오 범죄 과소 신고에 관한 정보, 과소 신고 해결 계획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 13519.6 POST 혐오 범죄 정책 지침 - POST에 대해 법 집행 기관, 민권 단체, 학계 전문가, 캘리포니아 법무부 등의 해당 주제 전문가와 협의하여 혐오 범죄에 대처하는 지침 및 교육을 개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지침에는 모든 주 법 집행 기관이 도입해야 하고 위원회가 모든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도입을 권장해야 하는 모범 정책 프레임워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치안관은 교육 과정이 개설된 후 1년 이내에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현직 치안관은 6년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422.92 법 집행 기관 혐오 범죄 책자 - 모든 주 및 현지 법 집행 기관에 대해 혐오 범죄 피해자와 대중에게 혐오 범죄에 관한 책자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현지 법 집행 기관은 14개 언어로 제공되며 기관 직인이나 그래픽을 삽입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법무부 표준화 책자(<https://oag.ca.gov/hatecrimes>)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422.94 혐오 범죄 수직 기소 파일럿 보조금 프로그램 - 캘리포니아 법무부에 대해 혐오 범죄 기소를 위한 수직 기소(초기 범죄 수사부터 범죄자에게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동일한 검사를 사건에 배정하는 것을 의미함) 부서를 생성, 지원, 확대할 목적으로 검찰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부서는 주로 혐오 범죄 피해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혐오 범죄 사건에 공정하고 공평하며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1547, 하위 항목 (a)(12) 및 (13) 혐오 범죄 정보에 대한 보상 - 일정한 혐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정보에 포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사에게 부여합니다.

§ 3053.4 가석방 조건 - 혐오 범죄 선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 대한 폭력, 위협, 스토킹, 괴롭힘 등의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가석방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접근 금지' 조건(피해자와 일정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추가 요건)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1410 캘리포니아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행위 -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는 캘리포니아 헌법상 보호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이 섹션에서 입법 기관은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이나 민족,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국적, 장애, 성적 지향, 또는 이와 같은 실제 특성이나 인지된 특성을 갖는 사람이나 집단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폭력 집단 및 개인의 행동으로 초래되는 공포, 위협, 신체적 피해로부터 안전하며 보호를 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 13023 법무 장관에 대한 보고 - 자금 지원을 전제로, 법무 장관은 현지 법 집행 기관에 대해 캘리포니아 법무부에 혐오 범죄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지시할 것과 현지 법 집행 기관은 캘리포니아 법무부에 보고한 정보를 매월 기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 13519.41 POST 혐오 범죄 교육 - POST에 대해 법 집행관 및 과건자를 위해 주 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소수자 그룹에 관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랄프 시민권법(Ralph Civil Rights Act) 및 톰 베인 시민권법(Tom Bane Civil Rights Act)

랄프 시민권법(민법 섹션 51.7)에서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람은 실제 또는 인지된 성별,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 국적, 종교, 장애, 건강 상태, 유전 정보, 결혼 여부, 성적 지향, 시민권, 주 사용 언어, 이민 신분, 정치적 성향 또는 노동 쟁의에서의 입장을 이유로 자신의 사람이나 재산에 대해 행해지는 폭력 또는 폭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나열된 특성은 단지 예시일 뿐이며, 이 법에는 다른 차별 주장의 근거도 있습니다. 톰 베인 시민권법(민법 섹션 52.1)에서는 개인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향유하는 것을 협박, 위협 또는 강압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시도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랄프 시민권법 또는 톰 베인 시민권법(Tom Bane Civil Rights Act) 위반 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에는 금지 명령, 금지 명령 구제, 헌법적 권리 및 법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형평법상의 구제 수단, 실제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25,000달러의 민사 벌금, 변호사 수임료 등이 있습니다. 법무 장관, 지방 검사, 시 검사 또는 피해를 입은 개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혐오 범죄 정책 및 조사 모범 사례에 대한 법적 요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형법 섹션 13519.6 및 섹션 422.87에 따라 모든 주 법 집행 기관은 혐오 범죄 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혐오 범죄 정책을 도입하거나 업데이트하는 모든 지역 법 집행 기관은 일정한 법적 요소를 포함시켜야 합니다.¹ 법령은 POST가 필수 법적 요소가 포함된 모범 정책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²

법적 요건

형법 § 13519.6

형법 섹션 13519.6에서는 주 법 집행 기관의 혐오 범죄 정책의 필수 요소를 명시하며, 현지 법 집행 기관이 해당 정책을 도입하도록 장려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요소가 여기에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혐오 범죄 법률 및 이를 집행하는 기관의 노력의 중요성에 관한 법 집행 기관 최고 책임자의 메시지, (2) 섹션 422.55의 '혐오 범죄' 정의, (3) 섹션 422.6을 포함한 혐오 범죄 법령에 대한 언급.

¹ '2021년 칼리드 자바라 및 헤더 헤이어 혐오, 폭행, 평등 위협에 대한 국가적 반대법(Khalid Jabara and Heather Heyer National Opposition to Hate, Assault, and Threats to Equality Act)(상위법인 '코로나 19 혐오 범죄법(상원 법안 937)의 일부이며 '자바라헤이어 혐오 반대법(Jabara-Heyer NO HATE Act)'으로 알려져 있음)은 연방 법무 장관에 대해 혐오 범죄 정책의 수립, 혐오 범죄 사건의 수집, 분석, 보고하는 표준 시스템 개발, 혐오 범죄 파악, 조사, 보고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의 설치, 기관 직원 교육, 혐오 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지역 사회 관계 행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주 기관과 현지 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조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34 U.S.C. § 30507(f)(2).

² POST 혐오 범죄 모범 정책은 정책 목적의 상세한 설명, 전체 모범 정책, 샘플 양식을 제공합니다. 이는 https://post.ca.gov/Portals/0/post_docs/publications/Hate_Crimes.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에서는 기관 직원이 직책별로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프로토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정 요소가 여기에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및 지역 사회와 접촉하고, 지역 사회 협오 범죄 예방 및 대응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협력하여 협오 범죄 가능성을 예방하고 대비함, (B) 협오 범죄 신고에 대한 대응, (C) 필요 시 법무부 협오 범죄 신속 대응 프로토콜 활성화 등의 지원 이용,³ (D) 지역 사회 후속 조치 등 피해자 지원과 후속 조치 제공, (E) 신고.

형법 § 422.87

형법 섹션 422.87은 섹션 13519.6의 요건을 더 상세히 다룹니다. 해당 섹션에서는 기존의 협오 범죄 정책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협오 범죄 정책을 도입하는 모든 현지 법 집행 기관에 대해 일정한 특수 요소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몇 가지는 위의 요건과 중복되지만 특수한 요건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또는 업데이트된 기관 정책에는 섹션 422.55 및 섹션 422.56의 정의, 섹션 13519.6에 따라 개발된 POST 모범 정책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정의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섹션 422.55에 언급된 실제 특성이나 인지된 특성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되는 편견 동기에 관한 정보도 정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사례의 상황에 따라, 증오, 적대감, 차별적인 피해자 선택, 분개, 협오, 경멸, 불합리한 두려움, 편집증, 냉혹함, 스틸 추구, 사회적 지배에 대한 욕구, '같은 종류'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감에 대한 욕구, 피해자의 보호받는 특성(장애나 성별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자를 약하거나 무가치하거나 만만하게 인식함으로 인한 피해자 취약성 인식이 편견 동기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법령은 장애 편견 협오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책에서는 가해자가 두려움이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에 대한 협오, 장애인은 열등하므로 '피해자가 될 만하다'는 인식, 눈에 보이는 특성이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식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교육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으로 대체 편의 장비가 필요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는 사람에 대한 분개 등의 요인으로 생겨난 적대감이나 기타 편견이 동기가 된 조짐이 있는지 고려하도록 경찰관에게 조언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에서는 경찰관이 장애 편견 협오 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을 인지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취약한 존재로 인식한 조짐이 있는지, 있다면 이러한 인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반대 편견에 근거한 조짐이 있는지 고려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이나 피해자와 다른 장애가 인지된 사람 등 취약해 보이는 다른 사람을 피하면서 특정 장애가 인지된 사람을 표적으로 삼은 경우, 이러한 상황은 가해자의 동기에 인지된 피해자가 갖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 범죄를 단순한 기회 범죄가 아닌 협오 범죄로 의심하여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법무부 웹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링크(<https://oag.ca.gov/system/files/media/ag-rapid-response-team-protocol-21.pdf>)를 이용하세요.

또한 이 법령에서는 종교적 편견 혐오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책에서는 특정 종교에 중요한 상징이나 특정 종교에 영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삼은 공격이나 편견이 반영된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을 경찰관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종교 및 그러한 상징과 물품의 예에는 (i) 불교의 경우 불상, (ii) 기독교의 경우 십자가, (iii) 힌두교의 경우 빈디 및 킬라크로 알려진 이마 표시, 옴 상징, 무르티스로 알려진 신상, (iv) 이슬람교의 경우 히잡, (v) 유대교의 경우 다윗의 별, 메노라, 야물커, (vi) 시크교의 경우 터번, 머리 덮개, 수염 등 깎지 않은 체모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혐오 범죄의 일반적인 과소 신고와 장애 반대 및 성별 반대 혐오 범죄에서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과소 보고에 관한 정보와 더불어, 섹션 13023에 따라 법무부에 혐오 범죄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프로토콜 등 이러한 과소 신고를 시정하기 위한 기관의 계획이 정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책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추가 자원이 필요한지 여부나 적절한 지역 사회 서비스 및 법률 서비스 기관에 피해자를 의뢰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할 책임, 형법 섹션 422.92의 요건처럼 피해자 및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기관의 혐오 범죄 책자를 제공할 책임 등(이에 국한되지 않음) 최초 대응자 책임의 체크리스트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해당 정책에는 필요할 때 경찰관이 현장에서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하고 즉각적인 방법 등, 모든 경찰관에게 정책 및 관련 명령을 전파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모든 경찰관은 법 집행 기관의 국장, 보안관, 관리자, 기타 최고 책임자가 지시하지 않는 한 항상 정책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섹션 422.92에 따라 부서에 혐오 범죄 책자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경찰관이 모든 혐오 범죄 의심 피해자와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책자를 배포하도록 교육받게 하는 경찰관의 직책이 해당 정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사 모범 사례

형법에 따라 POST는 국제경찰장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의 정책을 비롯한 다른 모범 정책과 함께 잠재적인 혐오 범죄 또는 편견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기관 모범 사례의 예를 제시하는 모범 혐오 범죄 정책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혐오 범죄 또는 편견 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에 법 집행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범 정책 요약입니다.

초기 대응

기관이 혐오 범죄 의심 사건에 초기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지 여부는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범죄 현장을 적절히 보호, 보존, 처리하며 피해자에게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경찰관에게 달려 있습니다.

협오 범죄 또는 편견 범죄가 의심되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범죄 현장을 확보하고 피해자, 목격자, 용의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요청합니다.
- 범죄 현장을 적절히 보호, 보존, 처리하여 범죄의 성질과 증거를 철저히 문서화합니다. 혐오 문서, 모욕적인 낙서, 스프레이 페인트 캔, 협박 편지, 혐오 단체가 사용하는 상징, 기타 편견의 상징 등 혐오 범죄의 물리적 증거 또는 표시를 모으고 사진으로 찍습니다. 향후 혐오 범죄 기소 시 도움이 되도록 현장을 완전히 문서화한 후에만 사건의 물리적 증거를 반출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반출할 수 없는 선동적인 성질의 증거는 먼저 가린 후 가능한 경우 제거해야 합니다.
- 범죄의 성질과 심각성,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선동적 영향과 관련 영향에 따라, 근무 중인 감독자 등 지휘 체계 내의 적절한 다른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 피해자에 관한 범죄 증거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 필요한 경우 피해자 및 목격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번역가 또는 통역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 예비 수사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신원, 용의자의 신원, 목격자의 신원과 더불어 해당 지역에서 이전에 발생했거나 피해자에게 발생했던 사건, 또는 피해자와 동일한 보호되는 특성이 있거나 기타 보호되는 특성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에 발생 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 정부 규정 섹션 7923.615, 하위 항목 (b)(1)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자 비밀 유지 제안을 받게 합니다.
- 용의자의 진술(정확한 표현이 중요함)은 물론, 편견 동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제스처와 문신 등의 신체적 표시를 기록합니다.
-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와 면담하고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전문 교육을 받은 경찰관 한 명에게 피해자를 배정할 것을 고려합니다.
- 위에서 자세히 설명한 형법 섹션 422.56의 '편견 동기' 정의에 따라, 편견이 범죄 실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기였는지 조사합니다.
- 형법 섹션 422.92절에 따라 기관의 혐오 범죄 책자를 제공합니다.
- 장애인과 면담할 때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고 적절한 편의 수단(예: ADA 표준, 점자, 시각 자료, 청각 장애인 또는 난청인을 위한 통역사 등)를 인지하여 제공합니다.
- 수사관, 검찰, 언론과의 접촉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⁴
- 피해자를 지역 사회 내 지원 및 아웃리치 서비스에 의뢰합니다.
- 피해자가 사건 진행에 따른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법 집행 기관의 수사를 맡은 담당자의 연락처를 가능한 한 최선의 정보로 제공합니다.
- 필요한 경우, 그리고 해당 사건이 트리거 이벤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구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법무부에 연락하여 법무 장관이 법무부의 혐오 범죄 신속 대응 프로토콜을 발동하도록 요청합니다.

4 이민자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주 및 연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 집행 공지 2020-DLE-01번 (https://oag.ca.gov/sites/all/files/agweb/pdfs/info_bulletins/2020-dle-01.pdf에서 확인 가능)을 참조하십시오.

수사

수사 성공에 중요한 다음 단계는 혐오 범죄 또는 편견 범죄 의심 사건의 현장에 있거나 후속 수사를 수행하는 수사관입니다. 지속적인 수사의 모범 사례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됩니다.

- 스틸형, 반응형/방어형, 임무형(하드코어)을 포함한(이에 국한되지 않음) 혐오 범죄 및 사건의 가해자 유형을 고려합니다.
- 수사 기법과 방법을 사용하여 혐오 범죄나 혐오 사건을 전문적인 방식으로 다룹니다.
- 형법 섹션 422.6 및 섹션 13519.6에 따라 권한을 내세워 자행된 혐오 범죄에 대한 신고를 철저히 수사합니다.
- 피해자 지원 및 후속 조치를 제공합니다.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경찰관이나 통역사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 추가 목격자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 사건을 둘러싼 상황과 겉으로 드러난 동기를 문서화합니다.
- 다른 법 집행 기록을 검토하고 현지 법 집행 기관 이외의 공무원 및 단체에 연락하여 해당 지역에서 편견으로 인한 다른 사건이 발생했는지 알아봅니다.
- 피해자가 특정 인종, 종교, 민족/국가, 성적 지향, 성별 집단 또는 기타 사안을 옹호하는 활동에 참여했는지 확인합니다.
- 사건이 종교적 공휴일이나, 과거 사건 기념일 또는 개인의 사망 기념일, 출생 기념일과 같이 편견 동기와 연관될 수 있는 공휴일에 일어났는지 판단합니다.
- 용의자가 과거에 편견 범죄 또는 조직적인 혐오 단체에 연관된 적이 있는지 알아냅니다.
- 용의자의 소셜 미디어 활동에 편견으로 인한 동기라는 잠재적 증거가 있는지 조사합니다.
- 용의자가 혐오 단체에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수색 영장을 요청하여 용의자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해당되는 경우)의 내용을 조사합니다.
- 목격자에게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청합니다.
- 용의자를 붙잡고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포상금을 제공할 것을 고려합니다.
- 기관, 주, 현지 정보 활동 조직과 수사를 조율합니다. 이러한 정보원은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패턴, 조직적인 혐오 단체, 용의자에 대한 분석을 수사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다른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혐오 범죄 및/또는 혐오 사건의 패턴을 평가하고 조직적인 혐오 단체가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혐오 범죄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기관은 위에서 설명한 피해자 대응 프로토콜 외에도 혐오 범죄 또는 혐오 사건 피해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과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혐오 범죄 또는 혐오 사건으로 인해 유발된 격렬한 감정을 현장에서, 그리고 후속 조사 과정에서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

- 피해자에게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관한 정보, 특히 피해자의 사건과 시스템 전반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합니다.
- 범죄 피해자로서의 권리가 자세히 설명된 마시법(Marsy's Law) 카드를 피해자에게 제공합니다.⁵ 캘리포니아주 헌법 제1장 28조 (b)절의 마시법(Marsy's Law)에 따라 모든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마시법(Marsy's Law) 카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 사법 절차의 후속 조치 및 다음 단계를 위해 피해자가 지역 체제 기반 피해자 서비스 기관을 통해 이러한 권리를 더 자세히 찾아보도록 권장합니다.
- 가능하다면 시스템 기반 또는 지역 사회 기반 피해자 옹호자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일부 피해자 옹호자는 전체 형사 사법 절차를 포함한 초기 범죄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현장 대응을 제공하여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따뜻한 지지, 옹호, 위기 개입, 자료, 동행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시스템 및 지역 사회 기반 피해자 옹호자는 지역 지방 검찰청, 법 집행 기관, 보호 관찰소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며, 지역 비영리 기관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혐오 범죄 피해자에게 다문화 상담 의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사회 조직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고려합니다.
- 편견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범죄임을 인정합니다.
- 피해를 입을 위기를 해결하고 범죄에 드러난 명백한 혐오, 편견에 맞서야 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가 주의 피해자 보상 기금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육

과건 직원, 접수 직원, 자원봉사자, 기록 직원, 지원 직원, 경찰관, 감독자,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부서의 혐오 범죄 정책에 대해 적절하게 교육받아야 합니다. 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모든 교육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형법 섹션 13519.6에 따라 POST는 혐오 범죄 파악, 수사, 문서화, 보고 시 법 집행 기관을 지원하는 교육 과정과 동영상 과정을 제공합니다.⁶ 교육 담당자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다른 주 및 연방 기관, 예를 들어 연방 법무부 또는 혐오 범죄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 사회 집단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⁷ 캘리포니아 법무부에서는 웹사이트에 혐오 범죄 교육 및 훈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⁸

보고

데이터 수집, 문서화, 보고는 기관에서 혐오 범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 모범 사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5 법무 장관의 마시법(Marsy's Law) 카드는 https://oag.ca.gov/sites/all/files/agweb/pdfs/victimservices/marsy_pocket_en_res.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POST 교육 기회 및 이용 가능한 동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OST 웹사이트 www.post.ca.gov를 방문하세요.

7 현재 미국 법무 장관실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목록은 <https://www.justice.gov/hatecrimes/resourc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톨러런스 박물관(Museum of Tolerance)에서는 혐오 범죄 대응에 관한 법 집행 기관 교육을 제공하며, 자세한 정보는 <https://www.museumoftolerance.com/for-professionals/programs-workshops/tools-for-tolerance-for-law-enforcement-and-criminal-justice/hate-crimes/hate-crimes-courses-for-ca-agenci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현재 자료 목록은 <https://oag.ca.gov/civil/prevedu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섹션 13023에 따라 혐오 범죄를 적절히 조사, 문서화하고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 보고하여, 해당 범죄가 연방 정부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합니다.⁹
- 사건을 문서화할 때는 필수 보고가 되도록 혐오 범죄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혐오 범죄 보고임을 나타내는 제목/형법 섹션을 통해 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기관장 또는 그 지정인은 해당 사건이 기관에서 혐오 범죄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기관에서는 혐오 범죄 신고를 보관하고, 적시에 범죄를 검찰에 알리며, 법적으로 의무화된 보고를 준수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서 형법 및 민권법을 집행하고 보호 조치를 시행하도록 돕는 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속 기관이나 개별 경찰관에게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916) 210-6300번으로 법 집행국 존 마쉬(John Marsh) 국장에게 문의하거나, Michael.Newman@doj.ca.gov 또는 (213) 269-6280번으로 법무부 민권 집행과 마이클 뉴먼(Michael Newman) 수석 차관보에게 문의하세요.

⁹ 34 U.S.C. § 41305 를 참조하십시오(‘혐오 범죄 통계법(Hate Crime Statistics Act)’에 따라 연방 법무 장관은 혐오 범죄 통계를 수집할 권한이 있지만 이 법은 주 및 지역 기관의 보고를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